Premium Report 제93호
(2022. 5. 31)

정보통신공사업
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방안 검토

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

작 성 자 : 홍태선 책임연구위원(원가관리실)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31 / E - hts@kici.re.kr

1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요

◆ **시공능력 평가제도**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, 경영상태,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의 항목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발주자에게 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

※ 활용 현황 :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 금액을 초과해야 함(입찰참가자 자격기준)

▶ **(현황 및 문제점)** 정보통신분야는 실질자본금 상한 기준, 기술자 등급별 인정 기준 등이 타 분야와 상이하며, 이로 인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

▶ **(목적)** 본 리포트는 건설, 전기, 소방 등 분야별 시공능력평가 방법 및 현황을 조사,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분야 시공능력평가산식의 항목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

2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현황

▶ **(실적 평가액)** 정보통신, 건설, 전기, 소방분야는 최근 3년의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실적 평가액을 산정하는 반면, 건설분야는 상이한 산정기준을 적용

- 정보통신, 전기, 소방분야는 최근 3년의 공사실적을 산술평균하며, 건설분야는 최근 3년의 공사실적에 연차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

※ 건설분야는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1.2, 2차년도 1, 3차년도 0.8 가중치 적용

- 건설분야는 관급자재 금액을 50% 인정하며, 정보통신, 소방분야는 관급자재를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, 전기분야는 관련 규정이 없음

※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제23조 제10항 제8호

[표 1] 분야별 실적평가액 산정기준 비교

구 분	정보통신	건설	전기	소방
실적평가 기간	최근 3년	최근 3년	최근 3년	최근 3년
산정방식	산술평균	가중평균	산술평균	산술평균
하수급 실적 포함 여부	○	○	○	○
하도급 실적 포함 여부	X	○	X	X
관급자재 포함 비율	–	50%	–	–

2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현황

▶ **(경영 평가액)** 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반영하여 산정되며, 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이 분야별로 상이

- 정보통신 및 전기분야는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50%를 반영하며, 건설분야 80%, 소방분야는 70%를 반영
- 경영평점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항목은 정보통신분야가 3개, 건설 5개, 전기는 4개 항목을 적용하며, 소방분야는 실질자본금 규모별 별도의 기준 적용하고 있음

[표 2] 분야별 경영평가액 또는 자본금평가액 산정기준 비교

구 분	주요 내용
정보통신 (자본금평가액)	▪ (실질자본금 × 경영평점 +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) × 50/100
건설 (경영평가액)	▪ 실질자본금 × 경영평점 × 80/100
전기 (경영평가액)	▪ (실질자본금 × 경영평점 +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,예치,담보한 금액) × 50/100
소방 (자본금평가액)	▪ (실질자본금 × 실질자본금의 평점 +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,예치,담보한 금액) × 70/100

2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현황

▶ **(기술능력 평가액)** 기술개발 투자액 반영 기간, 교육훈련 및 퇴직공제납입금 반영,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등 공사분야별로 세부 산정기준이 상이

- 정보통신, 전기, 소방분야는 최근 1년의 기술개발 투자액을 반영하고 있으며, 건설분야는 최근 3년의 기술개발 투자액을 반영
- 교육훈련 관련 실적평가액은 정보통신 및 전기분야에서만 반영하며, 퇴직공제납입금에 따른 평가액은 건설분야만 반영
- 기술자의 등급별 가중치는 정보통신분야 일부 구간에서 타 분야 대비 낮은 가중치가 적용

※ 초급 : 정보통신(0.5), 건설/전기/소방(1)

※ 중급 : 정보통신(1), 건설(1.15), 전기/소방(5)

2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현황

[표 3] 분야별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비교

구 분	정보통신	건설	전기	소방
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반영	○	○	○	○
보유 기술인력 가중치 반영	○	○	○	○
기술개발 투자액 반영 기간	최근 1년	최근 3년	최근 1년	최근 1년
교육훈련 실적평가액 반영	○	X	○	X
퇴직공제납입금 반영	X	○	X	X

[표 4] 분야별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

구 분	주요 내용
정보통신 (기술력평가액)	▪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×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× 30/100 +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+ 교육훈련 실적평가액
건설 (기술능력평가액)	▪ 기술능력생산액(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×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 × 30/100) + (퇴직공제납입금 × 10) +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
전기 (기술능력평가액)	▪ (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×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 +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) × 30/100 + 교육훈련 실적평가액
소방 (기술력평가액)	▪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×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× 30/100 +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

2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현황

▶ **(경력 평가액)** 정보통신 및 소방분야에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공사업 경영 기간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평점을 적용하여 20% 반영

- 정보통신은 1년, 소방분야는 2년 단위로 평점을 구분하고 있으며, 최소 1에서 최대 2까지 반영

※ 건설 및 전기분야는 공사업 경영기간에 따른 가점을 신인도평가액 항목으로 규정

[표 5] 정보통신 및 소방분야 경력평가액 산정기준 비교

구 분	주요 내용
정보통신 (경력평가액)	▪ 실적평가액 ×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× 20/100 ▪ 1년 미만(1.0), 1년이상~2년미만(1.1), 2년이상~3년미만(1.2), 3년이상~4년미만(1.3), 4년이상~5년미만(1.4), 5년이상~6년미만(1.5), 6년이상~7년미만(1.6), 7년이상~8년미만(1.7), 8년이상~9년미만(1.8), 9년이상~10년미만(1.9), 10년이상(2.0)
소방 (경력평가액)	▪ 실적평가액 ×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× 20/100 ▪ 2년 미만(1.0), 2년이상~4년미만(1.1), 4년이상~6년미만(1.2), 6년이상~8년미만(1.3), 8년이상~10년미만(1.4), 10년이상~12년미만(1.5), 12년이상~14년미만(1.6), 14년이상~16년미만(1.7), 16년이상~18년미만(1.8), 18년이상~20년미만(1.9), 20년이상(2.0)

2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제도 현황

▶ **(신인도 평가액)**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 적용되며, 분야별 규정된 상하한률을 기준으로 적용중

- 정보통신, 전기, 소방분야는 ±10%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, 건설분야는 ±30%로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짐

[표 6] 분야별 신인도 평가액 산정기준

구 분	주요 내용
정보통신	▪ (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) ×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▪ 실적평가액 · 자본금평가액 · 평가액 · 경력평가액 합산 금액의 ±10%
건설	▪ 가점요소 신인도평가액 합계 + 감정요소 신인도평가액 합계 ▪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±30/100
전기	▪ (공사실적평가액 × 경영평가액 × 기술능력평가액) ×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▪ ±10/100의 범위 내에서 산정
소방	▪ (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) ×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▪ 실적평가액 · 자본금평가액 · 기술력평가액 · 경력평가액 합산 금액의 ±10%

3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방안

◆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, 통계 변동성의 완화,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위해 **①실질자본금 인정기준 확대**, **②실적 인정기간의 변경**, **③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및 평가기준일 변경**을 제시

▶ **(자본금 평가)** 정보통신분야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까지만 인정하여 타 분야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질자본금 인정기준을 확대가 필요(예시, 15억원 ⇒ 20억원으로 상향 등)

- 건설, 전기, 소방 등의 분야는 실질자본금을 상한 없이 모두 인정
- '20년 기준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초과한 업체의 수는 2,454개이며, 전체 10,403개 업체 중 약 24%를 차지
- 실질자본금이 15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본금평가액 산정 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은 '20년 기준으로 약 28조원 수준

3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방안

▶ **(실적 평가)**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실적 평가액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적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적 인정기간의 조정이 필요(예시, 3년 ⇒ 5년 등)

- 건설분야는 2014년 당시 공공분야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적평가액의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공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
- 정보통신분야도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 시에는 안정적인 실적평가액 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상존하며,
- 특히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1회 공시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

3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방안

▶**(기술력 평가)** 정보통신분야는 동일한 수의 기술자를 보유하더라도 타 분야에 비해 기술력 평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상황으로서 타 분야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자 가중치를 변경(예시, 0.5씩 일괄 상향 또는 초급. 기능계 0.5, 중급 이상은 0.25씩 상향)

- 정보통신분야 기술사~기능계까지 6개 등급의 가중치 평균은 1.3인데 반해, 전기분야 5개 등급의 가중치 평균은 2, 소방분야는 4개 등급에 대해 평균은 1.8
-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초급기술자에 대해 0.5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반해 건설, 전기, 소방분야에서는 1의 가중치를 적용중

[표 7] 기술자 등급 가중치 조정 방안

구 분	1안			2안		
	현행	변경	증가폭	현행	변경	증가폭
기술사	2.5	3	+0.5	2.5	2.75	+0.25
특 급	2	2.5		2	2.25	
고 급	1.5	2		1.5	1.75	
중 급	1	1.5		1	1.25	
초 급	0.5	1		0.5	1	+0.5
기능계	0.25	0.75		0.25	0.75	

3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방안

▶**(기술력 평가 – 평가 기준일 변경)** 타 분야 산정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술자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일을 삭제가 필요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[별표 4] 중 기술력평가액 산정기준 나.목의 전년도 말일 기준을 삭제
- 소속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정보통신 및 전기분야가 18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소방분야는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정보통신분야에서만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일을 전년도 말일로 한정
- 정보통신분야의 평가기준일(전년도 말일) 적용으로 인해 인정 받지 못한 기술자 수는 2020년 기준 2,821명이며, 시공능력평가 금액으로 환산 시 약 2,216억원 규모

[별표 4] 시공능력의 평가방법

나.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하며,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를 평가하는 **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(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한다)되어**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(신규등록·신규양도·합병 후 공사업 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·신규양도·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)에 한한다.